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술산업의 정의 신설 등〉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88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조문별 검토	10
가. 총칙(제1장, 안 제1조~제4조)	10
나. 문화예술의 진흥(제2장, 안 제5조~제12조)	16
다.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제3장, 안 제13조~제22조)	29
라.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증진(제4장, 안 제23조~제29조)	44
마. 예술산업의 진흥(제5장, 안 제30조~제35조)	47
바. 문화예술진흥기금(제6장, 안 제36조~제39조)	55
사. 한국예술위원회 등(제7장, 안 제40조~제60조)	61
아. 보칙(제8장, 안 제61조~제67조)	72
자. 부칙	8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6. 7. 21.
3. 회 부 일 : 2026.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융자·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I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지역소멸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진입, K-컬처의 확산 등 급변하는 문화예술정책 환경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정책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2025년 기준 대중예술을 제외한 공연¹⁾ 티켓판매액이 6,952억 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²⁾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초예술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1972년 각종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모범으로 제정되고,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하고자 1995년, 2007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새롭게 다양해진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에 대한 지원 근거로써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대중음악, 대중무용, 서커스/마술을 제외한 연극, 뮤지컬, 한국음악, 서양음악, 무용, 복합공연

2)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p.4.

이에 개정안은 ①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②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③ 거점문화 시설의 설치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운영 단체의 공제 및 보험 가입을 새롭게 규정하며, ④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공모대행기관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⑤ 예술산업의 유통과 진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기존의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할 수 있게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근거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은 총 8개 장, 67개 조문으로 구성³⁾되어 있으며, 장 별로 보면 ① 총칙, ②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 예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⑥ 문화예술진흥기금, ⑦ 한국예술위원회 등 예술진흥 기관에 관한 사항, ⑧ 보칙으로 구분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4조)	○ ‘예술산업’의 정의 신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3) 현행법은 총 6개 장,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구 분	주요내용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안 제5조~제12조)	○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예술영재 지원 기관 지정 ○ 청년예술인 지원, 국제교류 지원, 학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
제3장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안 제13조~제22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거점 문화시설 건립·운영 예산 지원 근거 신설 ○ 문화예술행사 운영 단체 등의 예술인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대상 확대,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제4장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증진 (안 제23조~제28조)	○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제5장 예술산업의 진흥 (안 제30조~제35조)	○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의무,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마련, 창업·금융·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제6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안 제36조~제39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의 용자 추가
제7장 한국예술위원회 등 (안 제40조~제60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 ○ 한국예술산업진흥원 신설
제8장 보칙 (안 제61조~제67조)	○ 한국예술산업진흥원,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보고·검사 규정 신설 ○ 문화예술 진흥 사업 성과 평가 신설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신설

이러한 개정안과 현행법 조문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 비교표 >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책과 권장)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제9조(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
	제10조(청년예술인 지원)
	제11조(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제12조(학술활동 지원 등)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13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제14조(거점 문화시설의 설치)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장애예술인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제1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18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19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20조(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21조(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22조(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등)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제23조(장려금 지급 등)
제12조(문화강좌 설치)	제24조(문화강좌 설치)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25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26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7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2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30조(예술산업의 육성·지원 등)
	제31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제3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33조(창업지원)
	제34조(금융지원)
	제35조(기술개발의 지원)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3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3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39조(회계처리의 구분)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0조(한국예술위원회)
제21조(설립등기 등)	제41조(설립등기 등)
제22조(정관)	제42조(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43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장 등)	제44조(위원장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45조(위원의 임기)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4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4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관여 금지)	제48조(관여 금지)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4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제50조(위원회의 직무)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2조(소위원회)	제52조(소위원회)
제33조(사무처)	제53조(사무처)
제34조(감사)	제54조(감사)
제35조(성과의 평가)	제55조(성과의 평가)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제56조(협의체의 구성)
	제57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
제37조(예술의 전당)	제58조(예술의 전당)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59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60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국고보조 등)	제61조(국고보조 등)
제40조(감독)	제62조(보고·검사 등)
	제63조(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성과 평가)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의2(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제65조(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제66조(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과태료)

인공지능의 확산과 함께 사회·경제·기술 등 모든 영역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바,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동 법의 전반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 내 중복되는 조항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일반법으로 개정안은 장르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

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예술시장 성장 및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예술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하에서 개정안의 조문 순서대로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취지·효과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함.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장, 안 제1조~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 -----창달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술산업”이란 문학, 미술, 음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음악은 제외한다),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그로부터 파생된 예술상품을 창작·제작·기획·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책과 권장) ① ~ ④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 략)
<신 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현행보다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1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바, 목적 조항에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2조제1항제2호는 ‘예술산업’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있음. 예술산업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의 장르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로, 현행법 및 안 제2조제1호4)에 따른 ‘문화예술’의 장르에서 영화, 연예(演藝),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이 제외되어 있음.

현행법 제2조제1항제2호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14조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⁵⁾하고 있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만, 문화산업은 별도의 법률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게 정의⁶⁾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3⁷⁾은 문화산업통계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및 영상, 광고,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산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정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과 관련된 예술 분야도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산업적 관점에서의 진흥정책이 필요하며,

예술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산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예술산업’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술산업의 범위와 구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산업’ 분야의 일부인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인 ‘예술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임.

참고로,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해당 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⁸⁾

다만, 안 제2조제1항2호에서 ‘예술상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된 법령이 없고, 일반적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용어를 ‘상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과 현행법은 모두 정의에서 ‘문화소외계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안 제29조제1항(현행법 제15조의4제1항⁹⁾)에서 ‘문화소외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소외계층’은 해당 조항보다 앞선 제2조제1항제4호, 제28조(현행법 제15조의3¹⁰⁾)에서 언급되고 있고, 다른 법률¹¹⁾에서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의조항에 제2조제1항제5호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9)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해석·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나. 문화예술의 진흥(제2장, 안 제5조~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문화예술 공간의 설치</u> <u><신 설></u>	제2장 <u>문화예술의 진흥</u> 제5조(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예술 분야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예술영재의 발굴·육성 및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의 향유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유통 및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관련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 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 문화예술의 창작 및 유통 환경,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예술산업 현황 -----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통계 ----- ③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 ④ ----- 범위와 방법 ----- 제7조(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창작 관련 조사

현행	개정안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연구·비평 지원 2.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3.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창작공간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창작공간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국고보조 비율의 차등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의 영재(「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재를 말한다. 이하 “예술영재”라 한다)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영재의 조기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현행	개정안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예술영재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 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년예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인턴십 3.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참가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 청년예술인의 인적 교류 및 협업 6. 그 밖에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2.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3.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번역 및 배급 5. 문화예술 관련 국제행사 개최·지원 및 참가 6.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문화예술 창작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진흥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이 문화기본법 제8조12)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일부 포함된 상황임.

12)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별도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창작지원, 유통, 예술산업 진흥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보다 포괄적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과 공연, 미술, 국악 등 개별법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¹³⁾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4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계획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있음.

다만,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¹⁴⁾가 영화진흥기본계획

13)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계획 수립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시 영화진흥위원회 유사한 위원회 조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계획 수립시 한국미술협회 등 대표 예술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6조는 현행법령에 따라 3년마다 실시¹⁵⁾하고 있는 문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문화예술의 창작 및 유통환경, 예술산업의 현황까지 확대하고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이는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 진흥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비용지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지원, 예술영재 발굴·지원 기관 지정 및 경비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추진,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 진흥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 현황 >

구분	사업수행 기관	세부사업 내용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안 제7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지원,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역예술 지원
문화예술 진흥 전문인력 양성(안 제8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후원 매개 인력 양성, 예술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예술영재 발굴 지원 (안 제9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서울 본원, 세종· 광주·통영 캠퍼스) 운영
청년예술인 지원 (안 제1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청년 기초예술창작자 지원 차세대 및 현장 예술인력 육성 지원 공예 및 디자인 분야 청년 인턴십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안 제11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 뮤지컬 및 미술 해외진출 지원
학술활동 지원(안 제12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예술 정책연구 사업 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 체계적인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8조제5항은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안 제9조제4항은 예술영재 발굴 및 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므로 당사자에게 의견 개진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안 제17조제5항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안 제21조제5항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법률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문 규정을 두는 경우 보칙 장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¹⁶⁾이므로 유사입법례¹⁷⁾를 참조하여 보칙 장의 안 제64조(권한의 위임·위탁) 앞에 해당 조항을 통합한 청문조항을 별

16)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12

17) 「공연법」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8조제4항제2호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안 제9조제3항제2호는 예술영재 발굴 및 지원 전문기관이, 안 제21조제4항제2호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개정안에 명시적인 규정 또는 위임 규정이 없고, 지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과 지정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¹⁸⁾만을 두고 있음.

하지만, 지정요건은 지정 대상이나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라도 유사입법¹⁹⁾과 같이 하위

18)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8조(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 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미술작품의 공모 등) ③ 건축주는 시·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이하 “공모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시·도 공모대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모대행기관을 통한 공모절차 및 방법, 공모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공연법」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법령에 위임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및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지정요건도 함께 위임할 수 있도록 “전문(공모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7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창작, 장르 간 결합 등 융·복합 창작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창작지원에 ‘문화예술 분야 간 융합 창작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미술진흥법」

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안 제9조(예술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하여 교육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예술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바²⁰⁾, 법률 간의 정합성 고려 및 현장의 혼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제9조제2항에 “다만,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 및 설치에 대해서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와 같은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53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다.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제3장, 안 제13조~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장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 ③ (생략)	제13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4조(거점 문화시설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연장, 미술관 등 지역 거점 문화시설의 건립(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거점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 거점 문화시설 확충 계획의 수립, 지원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예술인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① 국가 또는 ----- ----- ----- ----- ----- ----- -----.
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 ----- -----.
<신설>	제1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문화시설에 이루어지는 공연·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나 행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행사”라 한다)를 주관·주최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법인·개인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u>및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u>(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⑧ (생략) <u>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u> <u>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u>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u>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u>	③ -----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u>-----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u>제18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u> <u>제19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u> ① ----- ----- ----- ----- -----<u>.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 ----- ----- ----- -----<u>.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전체 정수(定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u> ③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u>----- ----- -----. <u>제20조(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의 소</u>

현행	개정안
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생략)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유자(이하 “미술작품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미술작품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미술작품 소유자에게----- -----미술작품 소유자는-----. 1. ----- -----: ----- ----, 미술작품 소유자에게-----.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 ----- 제18조제1항에 ----- ----- -----. ② ----- -----. 1. ----- 2 ----- ----- 3 -----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③ 건축주는 시·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이하 “공모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모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공모대행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모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시·도 공모대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모대행기관을 통한 공모절차 및 방법, 공모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	제22조(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 -----

현 행	개 정 안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 -----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이하 “미술작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미술작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는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거점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또한, 안 제14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거점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²¹⁾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하는 거점 문화시설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임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확충,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6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6조는 공연·전시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주관·주최·운영하는자 및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행사 참여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에서 공연 단체가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한 일이 발생한 바 있음.²²⁾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	신축: 50 리모델링: 60	용지매입비 제외

22)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서울신문, 2025. 10. 21.

비록,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제작자는 실연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²³⁾하고 있으나, 이는 상호간에 계약 조건으로 위반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연자의 안전보험 가입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행사를 주관·주최·운영하는자 및 문화시설의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고, 배상 책임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감소시키며, 예기치 못한 피해로부터 문화예술행사 주최자 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²⁴⁾에 근거하여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²⁵⁾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문화예술행사 주최자 등이 공제에 의무

23)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57호)

제6조 (제작자의 의무) ⑤ 제작자는 실연자의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4) 「예술인복지법」(법률 제21593호, 2026. 10. 29. 시행)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25) [참고1].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계획(안)

적으로 가입함으로써 해당 공제의 초기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에 대하여 법령을 통하여 사업자 등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급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²⁶⁾하고 있음.

또한, 「체육인 복지법」²⁷⁾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체육인 복지법」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대회 등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최·운영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문화예술행사 주최자 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 지원 규정 신설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예술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주최·운영하는 행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가 개최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인 경우로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²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문화예술행사 주최자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16조를 입법화할 경우 유사입법²⁸⁾을 참조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

-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2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분야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현행법 제7조²⁹⁾와 동일한 내용임.

안 제17조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대상에 건축 분야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21조제2항은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추가하고 있고, 안 제21조제3항은 건축주거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이하 “공모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29)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현행법 제9조의4³⁰⁾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공모방식의 적용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서는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건축주가 공모를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¹⁾

30)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시장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공모를 대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공모절차, 공모기간, 소요경비 등 그 밖에 공모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러나, 미술작품을 공모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미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³²⁾ 심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³³⁾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모대행기관도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업무 대행을 하는 공모대행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한 보다 공정한 선정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작품 선정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22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3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 미술작품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 철거

33) “건축물 미술작품 둘러싼 지자체-작가간 갈등”, 서울문화재단, 2020. 2.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미술포털’을 통하여 미술작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미술작품의 분류, 가격, 용도별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미술작품 설치제도와 관련하여 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지방자치단체 미술작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존재하므로,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와 함께 심사위원 공개, 이해충돌 방지,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는 미술작품과 건축물·주변 환경·공공간의 조화 판단은 건축 전문성의 영역이므로, 안 제19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건축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포함하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미술작품 설치 시 해당 건축물의 설계 의도, 주변 환경 및 공공성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안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보수·철거) 전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건축 관련 단체도 안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모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는 미술작품의 공모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률적인 공모 의무화는 사업 지연 및 행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대하여 공모 의무대상 사업의 규모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공모대행기관은 이해충돌, 심사 공정성 논란 및 특정 기관으로의 권한 집중 우려를 감안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업무범위·감독체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미술작품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나, 유지관리 책임, 일물제 운영, 공모대행 기관 지정·운영 등 현장의 영향이 큰 사항은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문화예술의 향유와 복지증진(제4장, 안 제23조~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4장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증진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 ② (생 략)	제23조(장려금 지급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 ③ (생 략)	제24조(문화강좌 설치) ① ~ ③ (현행 과 같음)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청소년·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현행 과 같음)
<신 설>	제26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 ④ (생 략)	제27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② (현행 제1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생 략)	제2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 ⑤ (생 략)	제29조(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 ⑤ (생 략)

안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이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에 문화격차가 심화³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³⁵⁾

34) 지역문화지수는 계층화 분석으로 불리는 AHP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 통하여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를 지표로 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지수로, 수도권(0.292)이 비수도권(-0.118)에 비하여 0.410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수 분석)」, 2025, p.59.

35)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개정안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가 문화예술 정책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기본방침임을 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25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³⁶⁾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의 혼란 발생 우려 방지를 위해 “활동 단체”를 “동아리·동호회 등의 활동 단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6)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예술산업의 진흥(제5장, 안 제30조~제35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제5장 예술산업의 진흥</u> 제30조(예술산업의 육성·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술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술산업 현황 분석 및 평가 2. 예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현행	개정안
	<u>하여 예술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고시할 수 있다.</u> <u>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u> <u>제3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문화예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제33조(창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u> <u>2.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u> <u>3. 창업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u> <u>4.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정보 제공</u> <u>5.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u> <u>6. 그 밖에 예술산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57조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예술산업 관련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문화산업’은 영화·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물, 만화·애니메이션, 공연·미술품·공예품, 대중문화예술산업 등과 관련된 산

업으로 정의³⁷⁾되며, 콘텐츠산업부터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과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일상에서 문화산업은 보다 대중적이며 매체와 관련되어 산업으로의 형태를 일찍부터 갖춘 출판, 방송, 영화, 대중음악, 게임,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콘텐츠산업’³⁸⁾³⁹⁾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음악, 무용, 연극, 미술, 공예, 문학 등 좀 더 비상업적인 전통적 의미의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적 접근 보

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9) ‘콘텐츠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공연 분야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시범, “문화산업의 법률적 정의 및 개념 고찰”, 인문콘텐츠학회, 2018.

다는 창작 지원을 위한 단기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의 지원이 주를 이뤄왔었음.

< 예술산업과 콘텐츠산업의 대상 비교 >



자료 :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하지만, 예술산업 기업 수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예술시장은 꾸준히 그 규모를 확대하고 고도화되고 있음.

< 예술산업 기업 및 종사자 현황 >

분기	예술산업 기업 수	예술산업 종사자 수
‘24. 1분기	79,524개	807,666명
‘24. 2분기	80,498개	817,603명
‘24. 3분기	81,225개	822,895명
‘24. 4분기	82,939개	805,665명
‘25. 1분기	83,083개	819,089명
‘25. 2분기	83,965개	828,520명
‘25. 2분기	84,816개	838,992명

※ 자료 : “예술 산업 기업 동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울러, 예술 분야의 국내외에서의 성과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시장이 이에 부응하면서 점차 산업화의 모습을 갖추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예술 분야의 산업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등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예술의 산업화 관련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내역	2026년도 예산
예술산업 인력 양성	예술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예술분야 기업·취업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1,600
예술기업 지원	예술분야 창업기업 및 성장기 기업에 대하여 3,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6,519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예술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지원, 창제작 교류, 시연·유통 등 예술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아트코리아랩’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9,600
예술산업 정책 운영 지원	예술산업 조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술프로젝트 지원, 예술분야 AI 학습데이터 구축 연구 등	4,968
예술산업 금융지원 ⁴⁰⁾	예술사업체에 시설 개·보수 및 신작 개발 등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	50,00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40) 참고2.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개요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예술산업 진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예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와,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지원, 금융지원, 기술개발의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예산 확보를 뒷받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더 나아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예술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생태계가 산업의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5장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34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조 제목을 ‘금융지원’에서 ‘융자의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유사 입법⁴¹⁾의 경우 융자 이외에 투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조 제목을 금융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4조의 조 제목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5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기술’로 폭넓게 규정하나, 같은 조 제2항의 구체적 사업 근거에는 인공지능기술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기술 외의 기술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기술’을 ‘인공지능기술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융자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단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바. 문화예술진흥기금(제6장, 안 제36조~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6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 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 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제40조에 따 른 한국예술위원회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 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원으로 조성한다.	제3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 -----.
1. 정부의 출연금	1. -----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2. -----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 기는 수익금	3. ----- -----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신 설>	4.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입금	5. 제38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용 자의 상환금 6. ----- -----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 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 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4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는 ----- ----- ----- -----.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 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3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1. -----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2. -----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3. -----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4. -----
5. <u>문화예술인의</u> 후생복지 증진을 위	5. <u>예술인의</u> -----

현 행	개 정 안
한 사업 5의2. <u>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u>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u>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u> <u><신 설></u> 7. <u>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u> 8. <u>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u> 9. <u>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u> 10. <u>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u>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u>제18조제5호의2에</u> 따른 용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6. <u>예술인의</u> ----- ----- 7. ----- ----- 8. <u>제18조에</u> ----- ----- 9. <u>제34조에 따른 예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의 용자</u> 10. <u>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의</u> ----- 11. ----- ----- 12. ----- ----- 13. ----- ----- ----- 제39조(회계처리의 구분) <u>제38조제6호 및 제9호에</u> ----- ----- ----- -----.

안 제38조제9호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로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예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을 용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7조제1항제5호는 해당 용자의 상환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안 제39조는 예술산업 종사 사업자에 대한 용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재정용자사업⁴²⁾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이 있음.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분야 사업체 대상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여 예술산업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용자사업 현황 >

사업	소관 기금	사업 내용	2026년도 예산액 ⁴³⁾ (단위 :억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분야 사업체 시설 설치 및 운전자금 융자	5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60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사 업자 운영에 대한 융자	8,440.6
스포츠산업금융 지원(융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 설업체 등의 신규설치, 운 전자금 융자	2,416.4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2) 재정용자사업은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대상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재정활동인 동시에 금융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짐.

4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결과 반영

그런데, 기존의 재정융자사업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모두 각각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규정⁴⁴⁾을 두고 있음.

반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법적

44)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명문화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조문 체계상 새로운 용자 대상 범주를 추가하려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의견⁴⁵⁾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같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술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준 높은 예술콘텐츠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며, 관광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38조제1호(현행법 제18조제1호⁴⁶⁾)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인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근거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문화예술의 창

4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 p.177.

46)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작과 보급 및 조사·연구’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용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59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 한국예술위원회 등(제7장, 안 제40조~제60조)

현 행	개 정 안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7장 한국예술위원회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u>한국문화예술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한국예술위원회) ①----- ----- ----- <u>한국예술위원회</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54조 (생 략)	제41조 ~ 제54조 (현행 제21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음)
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성과의 평가) ①----- ----- <u>제38조</u>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과 측정·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생 략)	제56조(협의체의 구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 ①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현행	개정안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산업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2. 예술산업 관련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3. 예술산업 창업지원,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4. 예술산업 관련 조사·통계·연구 5.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6. 그 밖에 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예술의 전당) ① ~ ⑤ (생략)	제58조(예술의 전당)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 ⑧ (생략)	제59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제60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위원회, 진흥원,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예술위원회,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법을 포함한 문화 및 예술 관련 법률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정책 분야나 문화예술 현장에서 문화와 예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임.⁴⁷⁾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⁴⁸⁾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⁴⁹⁾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와 같은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과 관련된 분야의 진흥 및 육성 사업⁵⁰⁾을 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 제40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순수·기초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7) ‘예술의 경우 기초예술 또는 순수예술 분야가 속한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문화의 경우 좀 더 대중적인 분야 또는 매체와 관련한 분야를 일컫는 경향이 있음’
차민경 등,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p.92.

48)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 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49) 참고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현황

50) 2026년 예산 기준 주요사업은 ①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 육성, 글로벌 창작 역량 네트워크 강화,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예술창작지원 등 예술창작지원(691.2억원), ② 차세대 예술인과 현장 예술인을 육성하는 예술인력 육성(239억원), ③ 예술지원 정책개발, 기부금 사업, 민간후원활성화 지원 등의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293.4억원), ④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운영 등의 문화예술향유지원(3,276.4억원), ⑤ 청년 창작예술가 지원 및 공연예술연습공간조성 등 일반회계 수탁 사업(186.6억원), ⑥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위탁사업(38억원)임.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설립되었고,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원을 해산하고 위원회 조직으로 전환되며 현재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음.

과거 독임제 조직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 조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된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복잡하고 다양한 예술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음.⁵¹⁾

이와 같이 기관의 명칭 변경은 기관의 조직구조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개정안의 경우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구조와 직무사항의 변경 없이 단지 이름만을 변경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순수·기초 예술창작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조직의 명칭 변경은 이해관계자 등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현관 교

51)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70017호)”,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4. 9.

체, 전산 시스템 수정 등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40조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기관 명칭에만 ‘문화’를 삭제하여 용어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보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이래 50년 이상 ‘문화예술’을 포함한 명칭을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문화’를 삭제할 경우 국내외 예술계 이해관계자와 국민에게 축적된 인지도와 신뢰 상실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명칭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 제53조제1항(현행법 제33조제1항⁵²⁾)에 대하여 사무처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과 기금의 운용·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보조’ 대신 ‘처리’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유사입법⁵³⁾도 ‘처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52) 「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53)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안 제43조제2항(현행법 제23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⁴⁾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에 ‘건축’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 57조는 예술산업의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있음. 현재 예술산업 유통 등의 예술산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⁵⁵⁾가 담당하고 있음.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술산업 인력 및

54)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55) 참고4. 예술경영지원센터 일반현황

기업 성장 지원, 예술산업 조사, 예술-기술 융합 플랫폼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예술 특화 지원, 공연·미술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 및 시장 육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⁵⁶⁾

그러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들과 달리 법적 설립 근거가 부재한 상황⁵⁷⁾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을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

기관	근거 법률	법률에 명시된 주요업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기본법」 제11조의3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 개발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세종학당재단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

56) 2026년 예산 기준 주요사업은 ① 예술산업 인력 양성, 예술기업 지원 등 예술의 산업화 추진 (285.6억원), ② 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등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272.5억원), ③ 공연·전시 전국유통 지원(531.7억원), ③ 한국미술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미술 시장 지원(113.8억원), ④ 공연예술 관람료지원(41억원), ⑤ 미술 분야 전속작가제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위탁사업(41.5억원)

57)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중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로 골프장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진흥(주)만 개별 법률에 명시적 설립근거가 없음.

기관	근거 법률	법률에 명시된 주요업무
한국문학번역원	「문학진흥법」 제13조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제8조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등
국악방송	「국악진흥법」 제17조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등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등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 지원 등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등

이에 개정안은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산업 유통, 창업, 금융, 기술개발 지원 등 예술산업의 기반 마련 및 진흥을 위한 업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⁵⁸⁾에 따르면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본부·디자인본부·문화역284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공간재단⁵⁹⁾을 통폐합

58)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2026. 9. 3.

하여 가칭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고려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승계할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법정기관화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10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사업 중 예술산업 국제교류 및 예술산업 관련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관⁶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한국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업무 및 역할분

59)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서울 도심의 폐기된 합정동 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총 사업비 754억원, 사업기간 2018년~2027년)’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말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임.

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규정)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4.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9. 공공미술(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진흥을 위한 사업
10.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운영

답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적절한 조율과 함께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법 체계적인 사항으로, 안 제57조제7항은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유재산을 대부·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국유재산 무상 사용 등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⁶¹⁾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과 동시에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 설립 후 국유재산 특례가 필요한 시점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 제57조제7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개정안과 관련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안 제60조는 한국예술위원회, 한국예술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
관련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 안 제67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현재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관련하여 유사명칭
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예술인 복지법」⁶²⁾이 있으며, 개정안과 마찬
가지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2) 「예술인 복지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아. 보칙(제8장, 안 제61조~제67조)

현 행	개 정 안
제6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9조(국고보조 등) (생략)	제61조(국고보조 등) (현행과 같음)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보고·검사 등) ①----- -----진흥원, 예술의 전당,-----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제63조(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성과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와 지원을 받지 않는 자(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의 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원 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분석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위탁) ----- ----- ----- -----위원회, 진흥원,----- -----.
제41조의2(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생략)	제65조(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현행과 같음)
<신설>	제6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진흥원,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제67조(과태료) ① 제6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62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예술산업진흥원,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업무·회계 등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과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 승계하게 될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예술의 전당은 기타공공기관이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공직유관단체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감사 대상임.⁶³⁾

따라서, 보고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63)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례 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⁶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⁶⁵⁾을 감안

64)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18조(보고·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5) 다만, 개정안 제62조제2항과 같은 입법례도 존재함.

「예술인 복지법」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제29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하여, 안 제62조제2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63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3조제5항은 성과평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55조(현행법 제35조⁶⁶⁾)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5조제4항을 신설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6)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5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과 측정·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 기금 이외 일반회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⁶⁷⁾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재원을 더 배분하는 등 재정운용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도입된 제도지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기금에 대한 여러 부처의 통제규정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⁶⁸⁾이 있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운용의 평가, 재정사업 성과평가⁶⁹⁾,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⁷⁰⁾

67)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68)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70017호)”,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4. 9.

69)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⁷¹⁾ 등 다른 법정평가와의 중복되는 측면으로 인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⁷²⁾

이에 동 제도는 2013년 평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 제35조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안 제63조제1항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별도의 정의는 없지만⁷³⁾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 제63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안 제55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며, 두 성과평가 모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근거가 규정되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7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72) ‘문예기금사업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타 법정평가와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고 평가결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사)한국정책학회,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73)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안 제63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문화예술 진흥 사업(안 제38조 각호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어 수행 주체가 동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규정으로 판단됨.

따라서, 안 제55조에 따른 성과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과, 안 제55조와 제63조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55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안 제55조제4항 후단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성과 측정·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성과평가 위탁을 규정한 제63조제5항 후단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63조제1항에 대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문화예술 진흥·향유 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6년 예산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914억 9,20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361억 4,600만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들 사업도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성과평

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견해와 같이 이들 사업이 안 제63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63조제4항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 하거나 하였던 자가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 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는 대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⁷⁴⁾

74)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이에 따라 안 제63조제4항을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⁷⁵⁾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포함되는지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입법⁷⁶⁾의 경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형량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입법⁷⁷⁾을 감안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보칙 다음 제9장으로 벌칙 장을 신설⁷⁸⁾하여 그 안에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둘 필

합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6)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2027. 6. 3. 시행예정)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사진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산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산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안 제63조 및 안 제6조⁷⁹⁾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단순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과세정보⁸⁰⁾의 요구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추후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입법형식⁸¹⁾에 맞는 별도의 자료제공 요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8) ‘실체규정이나 보칙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벌칙의 존재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입법례가 아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53.

79)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81) 「관광진흥법」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경우 과세정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사 입법⁸²⁾의 경우에도 국세청의 의견처럼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서 과세정보의 요구를 전제로 과세정보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없는 상황임.

그러나, 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의 요청은 과세 정보의 요청을 포함하므로 법률에 과세 정보의 제공 요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세부적인 요구항목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에 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검토 사항, 유사 입법⁸³⁾

8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나목·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및 법체계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세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수정의견을 마련함.

< 안 제63조제1항·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정의견
제63조(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성과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와 지원을 받지 않는 자(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의 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	제63조(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성과 평가) ① ----- ----- ----- ----- <u>집단 간 비교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삭제></u>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다. 아이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개 정 안	수정의견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원 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분석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u>필요한 경우</u>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 ----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4.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6. 그 밖에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안 제66조는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산업진흥원, 예술의 전당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수뢰죄 등⁸⁴⁾을 적용할

84)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때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산업진흥원, 예술의 전당 임직원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개정안과 같이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⁸⁵⁾을 두고 있음.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85) 「저작권법」

제131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자. 부칙

개 정 안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미술작품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대표,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진흥원의 원장, 이사 및 감사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⑨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5조(예술의 전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이 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으로 본다.
- 제6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본다.
-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개 정 안

-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기금을”을 “「문화예술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으로 하고, 제10조의3제2항의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다.
-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5제6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에 따른 문화이용권”으로 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 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2)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 ⑥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다.
- ⑦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로 한다.
- ⑧ 미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다.
-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2호라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제39조의13제4항제4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9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로 한다.
- ⑫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다.
- 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로 한다.
-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의2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

개 정 안
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7조의3제2항제5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로 한다. ⑮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1항”으로 한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7조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 이므로, 이미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보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전부개정 내용에 맞춰 함께 개정하는 안 부칙 제8조의 경우 개정안에 열거된 법률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87),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88)등을 함께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부칙 제8조를 통하여 관련 법률이 최대한 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개정사항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보충적으로 유사입법례⁸⁹⁾와 같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8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

8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건축법」 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모 등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231호)

부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1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계획(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소득 수준이 낮고 불안정하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해 상호부조 기반의 공제 체계 구축
- ('26년 예산) 50억원(출연금/'26년 신규)
 - ※ (예산운영 방식) 출연금 운용 및 공제상품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공제사업 운영비 등 충당 ⇒ 예술인 공제사업 안착 후, 출연금 수익을 예술인 복지사업 등에 투입 예정
- (수행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지정/예술인복지법 제10조)
- (사업내용) ▲예술인, ▲예술사업자(문화예술기획업자등), ▲문화시설 등 대상 맞춤형 공제상품(보험형, 연금형, 저축·융자형 등) 운영

□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기반 조성) ▲「예술인 복지법」 개정*(26.4.28.) 및 공제사업 근거 마련, ▲공제사업 운영규정 등 제규정 제·개정(~26.10.),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자원),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등 공제사업 관련 조항 신설(26.10.29. 시행)
- (시범상품 출시·운영) ▲공제사업 위탁운영사(보험사) 공모 선정(26.6.), ▲예술인 특성 반영한 상품구조 설계 및 시범상품 개발·출시(~26.11.)
 - 시범상품으로는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적은 자본금, 단기간으로 운용가능한 공연·전시행사 등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검토
 - * 문화시설 예술사업자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여 수익 확보 및 공제사업 안정화 도모(~27) ⇒ 이후, 예술인 개인 대상으로 공제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28년~)
 - ** (공제상품(안)) ▲(가입대상) 공연전시 등을 기획운영하는 예술사업자, ▲(상품 특징) 예술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해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대인 대물) 및 단체상해 등 보장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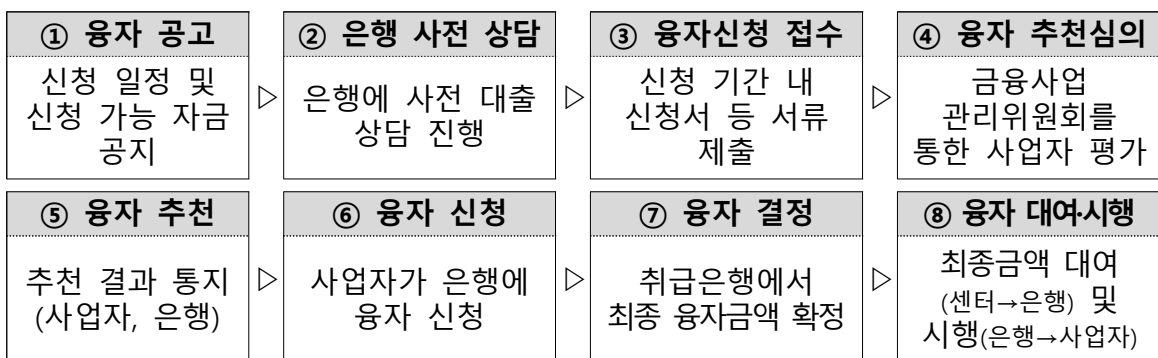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예술 분야 사업체 대상 저리 융자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및 성장 지원
- **(시행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 **(사업내용)**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와 예술작품 기획·제작·유통 등 서비스사업체 대상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
- **(추진방식)**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26년 예산)** 500억 원(문예기금)
-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3분기 3.80%)
* (중견기업 이상) 가산금리(+0.04%p), (중소기업) 우대금리(-0.21%p), (청년기업) 2.5% 고정금리
- **(융자조건)** 대상별·용도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 원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설치자금	10억 원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운영절차



참고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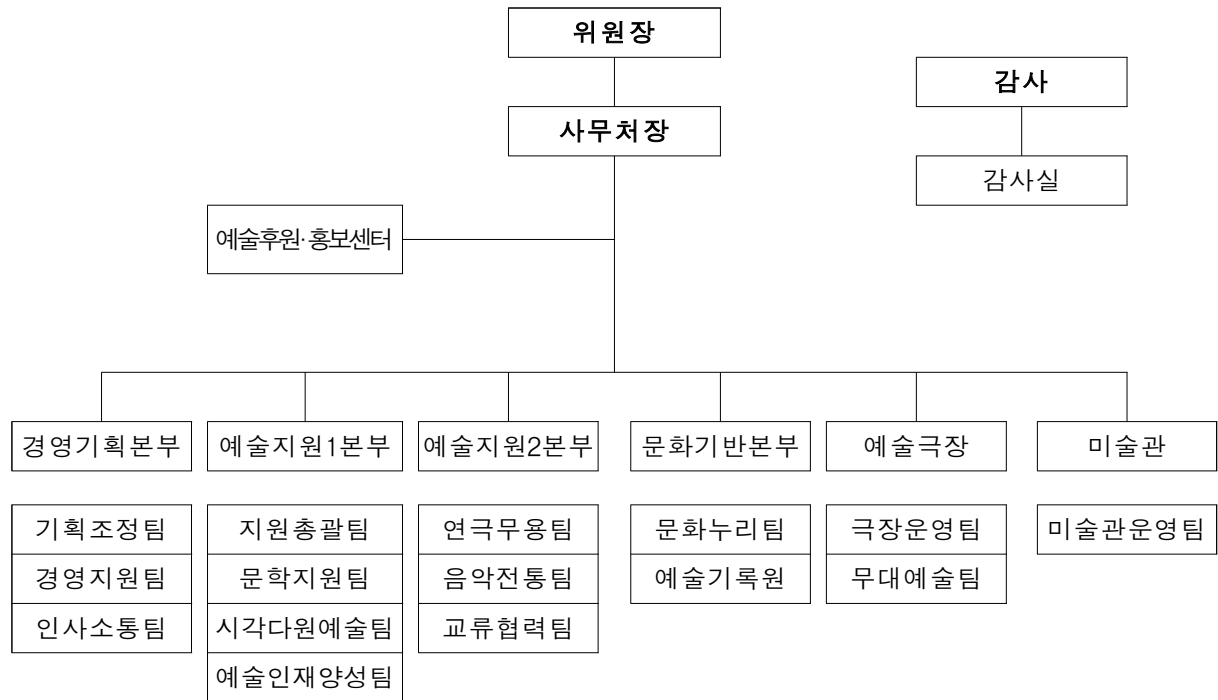
- 1972. 08.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법률 제2337호)
- 1973. 1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 1979. 05. 미술회관 개관(現 아르코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現 아르코예술기록원)
- 1981. 04. 문예회관 개관(現 아르코예술극장)
- 1992. 05.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現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2005. 0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제7415호)
- 2005. 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인 설립(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해산)
- 2007. 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 한국문화진흥(주)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010. 02. 아르코예술극장 : 한국공연예술센터로 분리·출범
- 2010. 03. 아르코예술정보관 :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분리·출범
- 2014.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나주 청사로 이전
- 2014. 05.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기관 통합
- 2019. 01.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 변경
- 2026.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위원회 출범

제9대 이범헌 위원장 호선 선출

□ 임 무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정관 제2조(목적)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 기구 :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센터 1원 14팀



□ 정 원 : 266명

(2026. 8. 기준)

구 분	계	임원	일 반 직 소 계	일 반 직	
				사 무 처 장	일 반 직 원
정 원	266	2	264	1	263
현 원	262	2	260	1	259

* 정·현원 일반직 I, II 포함

참고 4

예술경영지원센터 일반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설립목적

-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

□ 관계법령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2006년 설립)
- 운영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11년 지정)

□ 연 혁

- 2006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
- 2011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01호)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민간 지원기관 지정 (고용노동부)
- 2014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2017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 2020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지정 (~2026.3.31. 공연법 제4조)
- 2023년 아트코리아랩 개관
- 2026년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미술진흥법 제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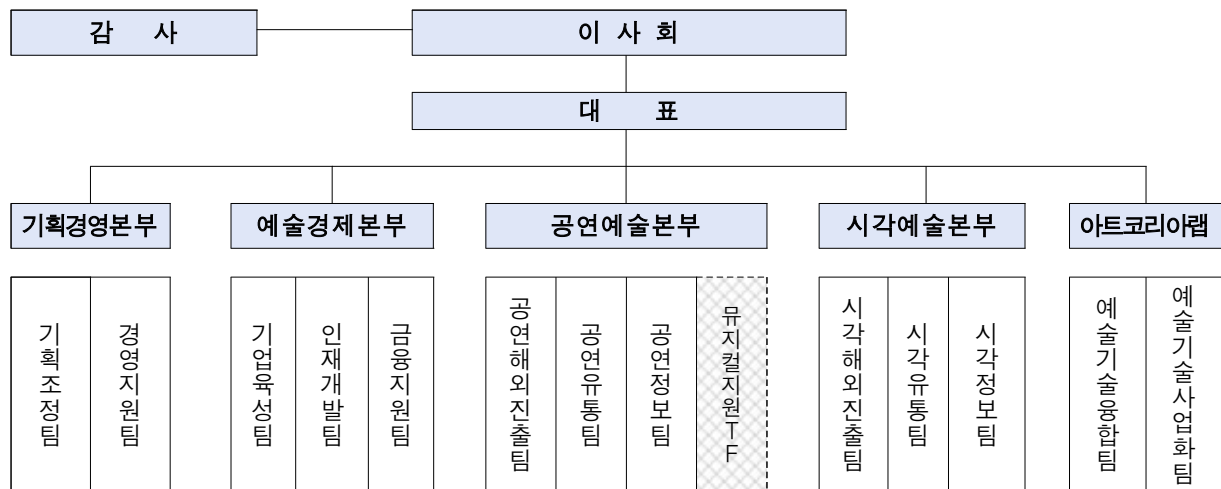
□ 임 무

- 예술 유통 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예술기관 유통인력 양성 및 지원
-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 예술분야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예술정보의 구축·관리·활용
- 예술분야 연구·조사 · 통계
-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직 : 4본부 1랩 13팀

- 상임 임원 : 1명 (대표)
- 비상임 임원 : 11명 (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 감사 : 1명

*  : 임시조직



□ 정원

(단위 : 명)

구분	대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공무직	총계
정원	1	1	3	7	11	18	10	26	77
현원	1	-	2	5	9	12	20	25	74